

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3. 12. 22

사회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3. 11. 26
- 다. 회부일자 : 93. 11. 30
- 라. 상정일자 : 93. 12. 22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93. 8. 10 공포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21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달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로 정하여 자동차 관련 각종 세입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세입에 관한 사항
 -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
 - 과태료 징수금
 - 시의 보조금
- 세출에 관한 사항
 -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차입금의 상환
 -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조례 제정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및 대구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.

현재까지 교통관련 세입세출은 일반회계로 운영하여 왔으나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.

4. 질의 답변요지

- 본 조례(안) 제4조 “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용자금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”라고 되어 있어 보조금을 주는 대상과 방법이 모호하여 보조금을 삭제할 용의는?
- 현재는 조례가 시행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여 보조금을 줄 수 없으며 향후 재원이 축적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장려수단으로 보조금을 주려는 내용임.
- 본 조례(안) 제6조 “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”라고 되어 있어 조례로 몇% 명시하면 어떻겠는가?
-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상 “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”로 되어 있으나 년도마다 중앙정부에서 몇%를 예비비로 계상하라는 지침이 내려옴으로서 해마다 예비비를 계상하는 %가 달라짐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임.
- 본 조례(안) 제4조 “따로 정한다”와 제8조 “규칙으로 정한다”를 규칙 및 내부지침 수립시 구의회의 협의
- 청장의 권한으로 규칙 및 내부지침 제정시 반드시 구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하겠슴.

5. 토론요지

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심각한 지경에 있으므로 주차장 특별 회계를 하루 속히 설치 주차장 확보에 전심전력을 다 할 것을 요구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소수의견 : 본 조례(안) 제4조의 보조금 및 제6조의 예비비를 삭제하자는 의견